

일반구매론 계약서

(구매기업용)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함)과 _____(이하 “구매기업”이라 함)은 구매기업에게 물품 및 용역 등(이하 “물품 등”이라 함)을 판매한 기업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구매기업이 ____년 ____월 ____일 체결한 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이하 “원 약정서”라 함)에 추가하여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및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금융결제원의 「B2B 업무 규약」 및 「동 시행세칙 제 6편 B2B 상거래정보」 등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합니다.

제 1 조(목적)

이 계약은 구매기업이 은행의 “일반구매론” 결제제도를 이용하여 판매기업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매기업”이라 함은 경상적인 영업활동으로서 물품 등을 구매하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기업을 말합니다.
2. “판매기업”이라 함은 구매기업에게 물품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기업을 말합니다.
3. “벤더기업”이라 함은 판매기업(=1 차 협력기업)에게 물품 등을 납품하는 2 차 협력기업을 말합니다.
4. “지급승인명세”(이하 “승인명세”라 함)라 함은 구매대금 지급을 위해 구매기업이 전송하는 구매자료를 말하며, 판매기업에게 지급하기 위하여는 은행의 지급승인이 필요합니다.
5. “지급승인금액”(이하 “승인금액”이라 함)이라 함은 승인명세 상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에게 지급할 구매대금을 말합니다.
6. “판매기업입금일”이라 함은 판매기업이 대금을 입금받는 일자를 말하며, 통상 구매기업의 결제일과 동일한 일자로 지정합니다.
7. “구매기업결제일”(이하 “결제일”이라 함)이라 함은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을 결제하여야 하는 일자로서, 승인금액의 상환일을 말합니다.
8. “선입금”이라 함은 결제일 전에 판매기업이 대금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할인하는 행위를 말하며, 제 9 호의 벤더입금을 포함하여 지칭할 때에는 “선입금 등”이라 합니다.
9. “벤더입금”이라 함은 판매기업입금일 전에 판매기업이 선입금한 대금을 벤더기업에게 지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0. “지급승인기간”이라 함은 승인명세 전송일로부터 결제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11. “선입금기간”이라 함은 판매기업입금일 전에 판매기업이 선입금하는 경우, 선입금된 날로부터 판매기업입금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12. “거치기간”이라 함은 판매기업입금일을 통상의 경우와 달리 결제일 이전으로 지정한 경우, 판매기업입금일로부터 결제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이자부담주체를 별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13. “연장기간”이라 함은 승인금액의 상환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약정한 기간을 말합니다.
14. “매매보호거래”라 함은 상거래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승인명세 전송 후 구매기업의 권리이전(인수) 절차 및 은행의 지급승인에 의해 판매기업이 승인금액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거래를 말합니다.
15. “기업인터넷뱅킹”이라 함은 기업뱅킹, CMS 등을 말합니다.
16. “전자적인 방식”이라 함은 구매자료전송, 선입금 등 일반구매론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가 기업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합니다.

제 3 조(승인명세의 전송 등)

승인명세의 전송은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합니다.

1. 구매기업은 경상적인 영업 활동에 의한 물품 등의 구매대금 결제 용도로만 승인명세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2. 승인명세의 항목은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3.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담보로 취득하는 일반구매론의 경우, 승인명세 전송시 세금계산서 관련 정보를 필수정보로 구성합니다.
4. 세금계산서 관련 정보는 세금계산서 종류, 세금계산서 발행일,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 및 상호, 공급받는자 사업자등록번호 및 상호, 세금계산서(승인)번호, 세금계산서공급가액, 세금계산서세액, 세금계산서합계금액 및 품목으로 구성합니다.
5. 승인금액은 최소 일만원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6. 승인명세 상 결제일 또는 판매기업입금일을 휴일로 지정한 경우, 다음 은행영업일로 자동으로 이연하여 처리합니다.
7. 구매기업은 기업인터넷뱅킹, 펌뱅킹서비스 등 전자적인 방식으로 승인명세를 전송,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8. 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경우 관리점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승인명세등록신청서" 및 해당 승인명세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9. 구매기업이 결제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상 납품대금의 지급수단일 경우 어음대체결제수단의 만기일을 물품 등을 받은 날부터 60 일 이내의 최단기간으로 정해야 하며, 만약 60 일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판매기업에 지급해야 합니다.
10. 구매기업이 결제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상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일 경우 어음대체결제수단의 만기일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 일 이내의 최단기간으로 정해야 하며, 만약 60 일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판매기업에 지급해야 합니다.

제 4 조(지급승인)

- ① 은행은 구매기업의 승인명세에 대하여 판매기업을 대금의 수취인으로 하는 지급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 ② 은행이 지급승인을 하는 때에, 은행은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에게 부담하는 대금지급채무를 이 계약에 따라 지급보증하며, 은행은 승인명세의 내용대로 판매기업에 대한 대금지급의 책임을 구매기업과 함께 부담합니다.
- ③ 구매기업은 은행의 지급승인에 따라 지급승인금액 전액에 대하여 은행에 대한 변제무무를 부담합니다.
- ④ 지급승인금액의 총 잔액은 원 약정서의 "여신(한도)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⑤ 은행은 지급승인한 승인명세를 판매기업이 확인할 수 있도록 기업인터넷뱅킹 사이트에 게시하기로 합니다.

제 5 조(승인명세 등의 변경 및 취소)

- ① 구매기업은 은행의 지급승인이 있기 전에는 승인명세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고, 지급승인 이후에는 판매기업으로부터 구매한 물품 등의 하자, 전산조작 오류, 기타 정당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은행에 지급승인의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승인명세의 판매기업, 승인금액, 결제일 등은 변경할 수 없으며, 세금계산서 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이 변경 가능합니다.
 1. 변경 가능한 세금계산서 정보
 - 가. 세금계산서 종류
 - 나. 공급받는자 사업자등록번호
 - 다. 공급받는자 상호명
 - 라. 공급자 상호명
 - 마. 품목명
 - 바. 세금계산서 공급금액
 - 사. 세액
 - 아. 합계금액
 2. 세금계산서 정보 변경이 가능한 경우
 - 가. 승인명세 등과 연결이 되어있지 않은 세금계산서 정보 변경 가능
 - 나. 당행의 승인명세 등과 연결이 되어있으나, 타행의 승인명세 등과 연결되어있지 않은 세금계산서 정보변경 가능. 단, 금융결제원에 집중된 세금계산서와의 정합성을 확인함
 - 다. 당행 및 타행의 승인명세 등과 이미 연결되어 있는 세금계산서는 변경 불가
- ② 구매기업이 승인명세를 취소하거나 구매기업의 요청에 따라 은행이 지급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판매기업의 동의를 득하거나 정당하게 취소한 것으로 간주하며, 은행은 지급보증 책임, 기타 승인명세 등의 취소와 관련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경우 은행은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

- ③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승인의 변경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1. 판매기업이 승인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미 선입금 등을 실행한 경우
 2. 판매기업입금일이 도래한 경우
- ④ 매매보호거래시 판매기업입금일 전 은행영업일까지 권리이전(인수) 등록되지 않은 승인명세에 대해서는 판매기업입금일에 자동으로 승인명세 및 지급승인이 취소됩니다.
- ⑤ 허위매출, 현금융통성거래 등과 같이 상거래와 무관한 승인명세 전송시, 은행은 지급보증하지 않으며 강제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지급승인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 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은행의 지급승인이 제한됩니다.

1. 구매기업이 은행의 내규 등에서 정한 여신의 비적격자인 경우
2. 이 여신 또는 은행과 약정한 다른 여신이 연체중인 경우
3.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정보 등)가 등록된 경우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채권은행협약, 기타 유사한 협약 등에 근거하여 채권금융기관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5. 구매기업에게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에서 정하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6. 여신(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7. 이 계약에서 정한 신용공여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8. 허위매출, 현금융통성거래 등 기업간 상거래에 수반되는 물품 등의 구매대금 지급용도 외의 승인명세를 전송하는등, 이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9. 원 약정서 제 6 조(감액, 정지)에 의하여 구매기업의 거래를 제한하는 경우
10. 승인명세에 대하여 (가)압류 등을 원인으로 지급보류가 등록된 경우
11. 금융결제원의 「B2B업무 규약」 및 「동 시행세칙 제6편 B2B상거래정보」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제 7 조(신용공여기간)

구매기업이 본 계약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는 신용공여기간은 아래와 같이 하기로 합니다. 다만,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 등(이하 “보증기관”이라 함)의 보증서를 담보제공하여 일반구매론 결제제도 이용시 연장기간은 적용하지 않기로 합니다.
(은행직원의 설명을 듣고 신용공여기간을 직접 기재합니다.)

구 분	신용공여기간
지급승인기간	최장 ()일 (최장 180 일 범위내)
연 장 기 간	최장 ()일 (최장 180 일 범위내)

제 8 조(개별대출의 실행)

① 지급승인에 따른 개별대출은 금융결제원의 「B2B 업무규약」 및 「동 시행세칙」을 준수하고,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실행하기로 합니다.

1. 판매기업에 의한 선입금 등이 실행된 때
선입금일 또는 벤더입금일에 구매기업명의로 개별대출이 실행되어 판매기업 또는 벤더기업 계좌로 입금됩니다.
2. 거치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판매기업입금일에 구매기업 명의로 개별대출이 자동으로 실행되어 판매기업 계좌로 입금됩니다.
단, 거치기간이 설정된 경우에도 판매기업이 판매기업입금일 이전에 선입금한 경우에는 선입금일에 구매 기업 명의로 개별대출이 실행되어 판매기업 계좌로 입금됩니다.
3. 거치기간 없이 만기입금하는 경우
결제일에 구매기업 명의로 당일만기대출이 자동으로 실행되어 판매기업 계좌로 입금됩니다.
단, 매매 보호 거래시 구매기업이 권리이전(인수) 등록하지 않은 승인명세에 대해서는 구매기업 명의로 당일만기대출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② 판매기업의 선입금 또는 벤더입금 신청시 세금계산서 관련 정보를 필수정보로 구성합니다.

- ③ 세금계산서 관련 정보는 세금계산서 종류, 세금계산서 발행일,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 및 상호, 공급받는 자 사업자등록번호 및 상호, 세금계산서(승인)번호, 세금계산서공급가액, 세금계산서세액, 세금계산서합계 금액 및 품목으로 구성합니다.
- ④ 선입금은 승인명세 전송 당일부터 판매기업입금일 전 은행 영업일까지 가능합니다.
단, 승인명세 상 선입금가능일이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선입금가능일부터, 매매보호거래방식인 경우에는 구매기업의 권리이전(인수) 등록일부터 가능합니다.
- ⑤ 선입금은 승인명세 상 승인금액범위 내에서 횟수에 상관없이 분할하여 취급이 가능합니다.
- ⑥ 개별대출의 만기일은 원 약정서에서 정한 대출(한도) 약정기일을 초과할 수 있으나 약정기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 9 조(판매기업 채권의 소멸)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에 대하여 가지는 외상매출채권과 판매기업이 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채권(이하 통칭하여 “판매기업 채권”이라 합니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소멸하는 것으로 합니다.

1. 판매기업이 선입금 등을 하는 경우
판매기업이 선입금 등을 하는 경우에는 선입금일 또는 벤더입금일에 구매기업 명의의 개별대출이 실행된 때에 선입금 또는 벤더입금 금액 범위 내에서 판매기업 채권이 소멸된 것으로 합니다.
2. 판매기업이 만기 입금을 받는 경우
결제일에 구매기업 명의의 당일만기대출이 실행되어 판매기업 계좌로 입금된 때에 판매기업 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합니다.

제 10 조(대출의 이자)

- ① 대출이자 확정시기는 이자 종류별로 아래와 같이 정합니다.
 1. 선입금이자 : 선입금 실행일의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에 의하여 금리가 확정됩니다.
 2. 거치기간이자 : 판매기업입금일의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에 의하여 금리가 확정됩니다. 단, 판매기업입금일 이전에 선입금 실행하는 경우 선입금 실행일의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에 의하여 금리가 확정됩니다.
 3. 연장기간이자 : 당초 약정된 연장기간 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별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에 의하여 승인명세 상 결제일에 금리가 확정됩니다.
- ② 대출이자는 대출이자 종류별로 이자부담 주체가 판매기업인 경우 대금입금시 차감하여 징구하며, 구매기업인 경우 결제 시 징구합니다.
 1. 선입금이자 : 선입금시 판매기업이 부담합니다.
 2. 거치기간이자 : 구매기업이 승인명세 전송시 지정한 부담주체가 부담합니다.
 3. 연장기간이자 : 구매기업이 부담합니다.
- ③ 판매기업이 선입금하지 않아 결제일에 실행된 당일만기대출을 당일 중 상환시 이자는 부담하지 않기로 합니다.
- ④ 제 7 조에서 연장기간을 약정한 경우, 연장기간 내에는 연장기간이자를 부담하기로 하며, 연장기간이 경과한 경우 상환시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은행계정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지급기로 합니다.

제 11 조(결제계좌의 지정)

구매기업 명의로 실행된 개별대출금의 만기일에 아래의 결제계좌에 해당 금액을 입금하기로 합니다.
(※하나은행에 개설된 구매기업 본인의 결제계좌와 관련된 사항을 직접 기재합니다.)

예금주	예금주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제 12 조(개별대출의 상환)

- ① 개별대출금의 상환자원은 은행영업시간까지 제 11 조에서 지정한 결제계좌에 입금하여야 합니다.
- ② 개별대출금의 만기일에 제 11 조에서 지정한 결제계좌에서 자동상환 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③ 자동상환 처리시 상환자원이 일부 부족한 경우에도, 원리금에 대하여 부분상환이 가능합니다.
- ④ 연장기간 적용시 해당 연장기간 동안에 결제계좌에 상환자원이 입금되는 경우, 입금되는 금액 범위 내에서 매은행영업일 자동상환처리하기로 합니다.

- ⑤ 결제계좌는 전용계좌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통장예금자동대출 계좌나 당좌대출 계좌를 결제계좌로 지정한 경우 영업시간 중 구매대금 결제로 인하여 일종대출이 발생하더라도 대출취급 및 이자징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니다.
- ⑥ 상환순서는 은행이 정하는 자동상환처리 순서에 따릅니다.
- ⑦ 어워매출, 현금용통성거래 등 상거래와 무관한 승인명세에 대하여 선입금이 실행된 경우에는 그 만기일에도 불구하고 즉시 상환하여야 합니다.

제 13 조(지급보류 등록)

- ① 이 계약과 관련하여 판매기업을 채무자로 하는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 등(이하 “압류”라 합니다)이 송달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기로 합니다.
 - 1. 판매기업이 선입금 등을 한 때에는 제 9 조에 따라 판매기업 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피압류채권이 없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 2. 제 1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급승인을 취소하고 구매기업이 직접 처리하기로 합니다.
 - 3. 지급승인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제 1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지급승인을 취소할 수 없는 경우 은행은 잔여금액에 대하여 지급보류 등록을 하기로 합니다.
 - 4. 지급보류 등록한 지급승인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처리합니다.
 - 가. 결제일 도래시 구매기업 명의를 대출을 실행하여 은행의 미지급금 계정에 예치하기로 합니다.
 - 나. 은행의 미지급금계정에 예치된 금액은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정당한 권리자에게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② 구매기업에게 압류가 송달된 경우 구매기업은 지체없이 은행에 해당 사실을 통지하기로 하며, 구매기업이 통지를 지체하여 이 계약에 의한 거래가 실행된 경우 구매기업이 변제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 14 조(수수료의 운영기준)

일반구매론 이용시 아래와 같이 지급승인 건별로 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합니다.

- ① 취급수수료 : 지급승인 건별 부담하는 수수료로서, 판매기업 입금계좌 지정은행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적용합니다. 단, 판매기업의 입금계좌 신청시 타행계좌로의 신규 지정 및 변경은 제한하는 것으로 합니다.

(은행직원의 설명을 듣고 해당되는 “□”에 “✓” 표시하고 수수료금액을 직접 기재합니다)

부담주체(택 1)	계좌지정은행	약정수수료	징수시기
<input type="checkbox"/> 판매기업	하나은행	원	판매기업부담시 : 대금입금시 차감 구매기업부담시 : 결제일에 징구
<input type="checkbox"/> 구매기업	타 행	원	

- ② 선입금미실행수수료 : 은행이 지급보증하는 지급승인 건별로, 판매기업의 선입금 미실행 잔액에 대하여 판매기업이 부담하는 수수료로서, 아래와 같이 차등 적용합니다.

(은행직원의 설명을 듣고 수수료금액을 직접 기재합니다)

선입금미실행금액	수 수 료	비 고
일백만원이하	면 제	(1) 지급승인건별 선입금 소진율 70% 이상인 경우 면제 (2) 지급승인일로부터 판매기업입금일까지의 잔여기간이 7 일 이하인 경우 면제
일천만원이하	원	
오천만원이하	원	
일억원 이하	원	
일억원 초과	원	

제 15 조(이용시간)

- ① 은행 영업점을 통한거래는 은행 영업시간 중 가능하며, 기업인터넷뱅킹을 통한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비스 종류	평일	토요일/일요일/공휴일

조회	24 시간	가능
판매기업 등록	08:00~22:00	불가
선입금 신청	08:00~19:00	불가
구매자료 승인/변경/취소 (당일전송 당일만기) (당일전송 익영업일만기)	08:00~22:00 08:00~15:00(EDI 14:00 까지) 08:00~20:00(EDI 16:00 까지)	불가
벤더입금	08:00~19:00	불가

- ② 이용시간은 은행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고객이 은행에 등록된 연락처 등을 통해 고객에게 통보하기로 합니다. 단, 등록된 연락처의 변경 후, 은행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본점, 영업점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한 고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③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보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제 16 조(계약의 체결 및 변경)

- ① 구매기업은 이 계약과 관련한 자료를 은행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서면으로 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② 이 계약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하거나 이 계약을 보충하기 위하여 은행, 구매기업 및 판매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 사이에 별도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③ 필요한 경우 은행과 구매기업은 협의에 의하여 서면으로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면책)

- ① 제출서류의 허위, 위변조, 작성오류 등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는 구매기업의 부담으로 하며, 은행에 대하여 아무런 청구도 하지 아니하기로 합니다.
- ② 본 계약의 이용거래와 관련한 은행의 손실부담 및 면책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 15 조 (위험부담·면책조항)" 및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 20 조(손실부담 및 면책)"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 18 조(계약의 효력)

- ① 이 계약의 효력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원 약정서의 약정기간까지 유효합니다.
- ② 전 항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지급승인 된 승인명세에 대하여는 상환 될 때까지 이 계약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③ 이 계약서, 원약정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및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금융결제원의 「B2B 업무 규약」 및 「등 시행세칙 제 6 편 B2B 상거래정보」의 내용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이 가장 우선 적용되고, 다음으로 원약정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금융결제원의 「B2B 업무 규약」 및 「등 시행세칙 제 6 편 B2B 상거래정보」의 순서로 하며,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 「예금거래기본약관」을 적용합니다.
- ④ 은행과 구매기업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계약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 19 조(관할법원의 합의)

이 계약에 관하여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 20 조(기타 특약사항)

